

인천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618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618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1가단2791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득

피고, 항소인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철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1가단27915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와 피고 사이에 2018.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46,702,8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702,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5쪽 2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이민영, 판사 박정운